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09다973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09다9733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나77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가단7212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11.선고 2009나7726 판결

판결선고 2014.10.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이 사건 계는 조합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로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일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대법원 1998.3.13.선고 97다57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거나 계주인 c의 개인사업 또는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도적으로 계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계금 수령의 순번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예정된 계모임과 다른 일시, 장소에서 계모임을 개최하여 참석한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원고 대신 계금으로 수령하고, 그 달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피고가 수령한 계금 1,480만원과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1,080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계주인 c와 다른 일부 계원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와 피고의 순번을 바꾸어 그 계원들에게서 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의 계금으로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순번 변경은 원래 순번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계주인 c에 대하여 계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계주인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되어 계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계주인 c 사이에 이 사건 계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계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주인 c 내지 다른 계원인 피고에 대하여 본래의 급부 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계주와위 관계에서 계불입금 지급 채무와 계금 지급 채권을
가지므로 계주의 동의 아래 계금을 수령한 것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이 재산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 대법관 박○○ 주 심 대법관 권○○